

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
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최광옥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,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,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정목적,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4조)

○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-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)
-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,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지원·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, 도지사의 책무,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계획, 공공데이터위원회 설치,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품질관리, 민간협력 및 위탁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9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한다고

규정하였는데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. 데이터의 이용 등에서 분야가 유사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-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을 확대하고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제정 취지나 내용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. 끝.